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2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2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 '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별표 수수료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문서·대장·도면·카드 등
 - 사본(1매기준)
 - A3이상 300원 - 1매 초과시 100원
 - B4이상 250원 - 1매 초과시 50원
- 녹음(녹화)테이프, 영화필름, 슬라이드 등에 관한 수수료(별첨안참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공공기관의 문서 테이프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등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